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시방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지조성 공사 비다짐 쌓기 구간의 안정성 강화 및 향후 조성 부지에 시공되는 건축물의 시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다짐 쌓기의 재료와 시공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KCS 11 20 20(쌓기)

가. 코드명 개정

- 흙 이외의 재료(암, 산업부산물 등)도 쌓기 재료로 사용 가능하므로, 코드명을 “흙쌓기(성토)” 에서 “쌓기” 로 개정

나. 적용범위 명확화

-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 시 KCS 11 20 20(쌓기)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다.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 쌓기 재료의 최대치수(300 mm) 외 표준적인 현장 시공 입도 제시

라.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 향후 건축물 설치 위치에 암(버력) 쌓기 시공 여부는 KCS 10 10 05(공사 일반) 1.10(착수 전 합동조사)에 따라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louishan@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8, 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